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59호)

- 2000. 9. 29.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 1. 실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14.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8. 14.
- 다. 상정일자 : 2000. 9. 29.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지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 가. 제안이유

- 등기능 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신설
  - 자치행정과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 인력의 본청이관 수행에 따른 업무과증, 대민행정 소홀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 □ 주요골자는

-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 (안 제5조제1항))
-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2항) 하려는 것임.

####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도 “자치구 행정기구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행정3101-1952(2000. 7. 1)호로 동 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단속 시한으로 승인하였으며,
-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와 주민자치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동 기능 전환 목적이 완료될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3항이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내역(존속시한 2001년 6월 30일)과 맞지 아니하고,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등에 의거 자치법규인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법체계상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과와 분리하는 것으로 되는데 총무과 어느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며 자치행정과는 팀이 몇 개 생기고 정원은 몇 명인지?

답) 총무과에 현재 총무팀, 인사팀, 행정팀, 사회진흥팀, 의회협력팀, 민방위팀 그리고 친절팀등 7개팀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신설될시 3개안을 마련하여 협동하고 있는바,

제1안 총무과내에는 총무팀, 인사팀, 의회협력팀, 청사관리팀, 친절팀으로 정원 23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9명,

제2안 총무과내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사회진흥팀, 친절팀으로 정원 24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6명,

제3안 총무과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 친절팀으로 정원 27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으로 정원 15명으로 보면 총무과 업무에서 자치행정과로 빠져나가는 만큼 총무과 업무는 축소됨.

질) 자치행정과의 주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하는데 사회진흥,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로 흡수되면 내년 6월30일 존속기간이 끝나고 사회진흥 및 민방위팀이 원위치로 가게 되는데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게 아닌지?

답) 자치행정과가 등행정기능 전환과 관계있는 팀이 주업무로 이루어 지는데 민방위, 사회진흥업무가 어짜피 동업무였고 나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완전 전환되면 동인력을 구청에서 흡수해야 하므로 과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금부터 준비중임.

질)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인 기구라지만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동사무소 인력을 구청에서 흡수하여 자치행정과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 서울시 시범구였던 성동구청의 경우 전동이 동시에 주민자치 실시를 하여 주민자치과, 징수과를 설치,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업무 및 주민등록, 민간단체지원, 사회진흥 업무까지 맡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된 후 주민자치과와 징수과를 합해서 하가과를 신설,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우리구도 주민자치센터 정착이 된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과를 신설 동사무소의 인력을 흡수예정임.

질) 자치행정과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목적이면 총무과내에 주민자치팀을 신설하여 운영해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심의 보류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는 이느과에서 담당을 할것인지?

답) 조직관리상 내부적인 일과 외부적인 일) 분리되어야 원칙인데 우리구는 모두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등 대내적인 일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등 대주민과 관계되는 일로 분리코자 하며, 16개동이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정비라든가 안테리어등 업무가 광범위 하여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됨.

질) 16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이 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 우선 동기능 전환으로 용이한곳은 먼저 실시하고 청사가 좁은 반포1동, 서초 2동등은 조금 보류를 하였다가 새청사를 마련한후 실시하는 방안과 가까운 곳에 임차를 하여 자치센터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5. 토론자 및 토론토록

### ① 수정동의안 발의(발의자 : 권금택 의원)

안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2001년6월30일까지)로 운영하되 복적달성(동기능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수정안 참조

### 7. 석사결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